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3.

발의자 : 김판조 의원

외 2인

1. 수정이유

-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키고, 점용료의 부과에서 군도에 대한 도로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에 있어 “도로법 제43조” 다음에 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”을 삽입하고
- 제4조(점용료부과)제5항을 “도시계획도로 중 폭20m미만 도로와 군도(단, 폭2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군도는 제외한다)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군세입으로 부과·징수한다”로 수정 한다.

붙임 :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1부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, 제1조(목적) “도로법 제43조” 다음에 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”을 삽입한다.

안, 제4조(점용료의 부과)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도시계획도로 중 폭 20m 미만 도로와 군도(단, 폭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군도는 제외한다)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군 세입으로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도로법 제43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점용료의 부과)①~④(생략) <u>⑤시도로(자동차 전용도로, 폭 20m이상도로)</u>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시세입으로 군도(폭 20m미만도로)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군세입으로 부과·징수도록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<u>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</u>----- -----. -----.</p> <p>제4조(점용료의 부과)①~④(개정안과 같음) <u>⑤도시계획도로 중 폭 20m미만도로와 군도(단, 폭2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군도는 제외한다)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군세입으로 부과·징수하도록 한다.</u></p>

서명날인서

의원명	서명	날인 (등록된 인감도장 사용)
이경식		
김판조		
도기태		